

제400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9월16일(금)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1)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0)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8)
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8)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0)
1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9)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9)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8)
16.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0)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5)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8)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5)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4)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5)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8)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9)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5)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5)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3)
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6)

3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1)
3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6)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0)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5)
3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0)
3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4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7)
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6)
4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7)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5)
4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6)
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8)
4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0)
4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3)
4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3)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8)
5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9)
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5)
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5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9)
5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6)
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7)
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1)
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5)
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1)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7)
60.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7)
6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26)
6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8)
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4)
6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3)
6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6)
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9)
6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0)
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8)
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8)
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5)
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7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3)
7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3)
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5)
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7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8)
7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9)
7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8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7)
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0)
8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5)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2.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6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1) 7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0) 7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7) 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8) 7
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8) 7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7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0) 7
12.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9) 7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7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9) 7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8) 7
16.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0) 7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5) 7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7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8) 7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5) 7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4) 7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7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7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5) 7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8) 7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9) 7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5) 7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5) 7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3) … 7	
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6) … 7	
3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1) … 7	
3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6) … 8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 8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 8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0) … 8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5) … 8	
3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0) … 8	
3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 8	
4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7) … 8	
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6) … 8	
4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7) … 8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5) … 8	
4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6) … 8	
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8) … 8	
4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0) … 8	
4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3) … 8	
4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3) … 8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8) … 8	
5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9) … 8	
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5) … 8	
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 8	
5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9) … 8	
5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6) … 8	
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7) … 8	
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1) … 8	
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5) … 8	
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1) … 8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7) … 8	
60.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7) … 8	
6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26) … 8	
6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8) … 8	
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4) … 8	
6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3) … 8	
6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6) … 8	
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9) … 8	
6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0) … 8	
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8) … 8	
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8) … 8	
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5) … 8	

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 8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 8
7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3) … 9
7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3) … 9
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5) … 9
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 9
7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8) … 9
7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9) … 9
7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 9
8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7) … 9
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0) … 9
8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5) … 9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틀 전 신당역에서 스토킹과 불법촬영 범죄 재판을 하루 앞둔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슬프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불법촬영으로 신고했고 올해 2월에는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인해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검찰의 소관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청구가 가능했지만 확실한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이 상정됩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한 젠더폭력에 대한 안전조치를 담은 법안들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역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관계 부처들의 현안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안보고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권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권인숙 한준호 위원님의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먼저 오늘 상정하기로 한 안건을 모두 상정한 후에 원하시는 위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족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상 6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목요일 오전에는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해서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시찰과 관련해서 방문 기관이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시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말씀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10월 27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잠정적으로 하고요. 본회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국회법 제128조 등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까지 총 1876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여성가족위원회 채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관증인으로 배

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의 붙임 자료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장관·차관 등 11명을, 공공기관은 각 기관장 5명을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수감기관의 기관증인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이나 간사 위원 간의 협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직원이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인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반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증인·참고인의 선정과 선정된 증인·참고인의 변경 및 철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1)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9)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0)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8)
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8)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7)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0)
1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9)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5)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9)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8)
16.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0)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5)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7)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8)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5)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4)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8)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9)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5)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8)
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9)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5)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5)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3)
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6)
3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1)
3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6)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9)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4)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3750)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5)
3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0)
3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0)
4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7)
4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6)
4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7)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5)
4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6)
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8)
4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0)
4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3)
4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3)
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8)
5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9)
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5)
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8)
5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9)
5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46)
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7)
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1)
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5)
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71)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7)
60.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7)
6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26)
6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8)
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654)
6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3)
6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846)
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9)
6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0)
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08)
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18)
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115945)
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62)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9)

7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3)
7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3)
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5)
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3)
7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8)
7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9)
7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2)
8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7)
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0)
8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5)

(10시13분)

○위원장 권인숙 의사일정 제4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두 분께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접 하시겠다고 요청이 오셨습니다. 이를 먼저 듣고 정부 제출 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의원 존경하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오기 전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됐던 여

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할머니들의 말씀 속에 그 고달픈 세월이 진하게 묻어나서 슬픔과 죄송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해로 광복이 77주년이 되었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시간은 1945년에 멈춰 있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불과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서 일본 전범기업의 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오인을 받아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이나 가정불화 등을 겪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보호와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생활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내용,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생존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또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본 법안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자서전을 국회의원 삼백 분 모두에게 전달한 바 있고, 이 법안에 여야 국회의원 백열여덟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역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후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일본에서의 기나긴 소송에서도 국가가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나라가 있는데도 언제까지 피해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운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0항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토킹은 범죄라고 하는 당연한 상식이 법에 새겨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은 22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비로소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비롯한 형사법적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스토킹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성남, 6월 8일 안산, 7월 5일 안동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신속하고도 사려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1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비통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의 대응을 위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려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들에 대하여 빠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김현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상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2항까지 79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법률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일부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비롯한 5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쉼터 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자립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청소년 대상 범위,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기존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의 유사 중복 문제, 입·퇴소가 반복되는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 지원 계획 수립 가능성,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요건 충족에 따른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가구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지 정보를 확인한 자가 고지 정보를 공개·수정·삭제 또는 고지 대상자 차별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거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공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은 생략하고 4쪽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과 61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에 지속적 괴롭힘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 새로운 폭력 유형마다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률 제명, 피해자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식, 상담원 자격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긴급 선지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미확보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로 이어져 장래에 더 큰 복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양육비 긴급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정책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가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선행과 양육비 긴급 선지급 관련 추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저는 5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위 상임위가 출범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구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82건의 법안이 이렇게 상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4월 이후에 발의된 법안만 해도 30개가 됩니다. 이 안에는 이번의 신당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안만 7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상임위가 소위 구성을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아마 간사 간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에는 적어도 소위 구성을 완료해 주시고, 국감 전에는 법안소위를 돌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인숙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같이 노력해 보지요.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먼저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대체토론 때 하시겠습니까?

○전주혜 위원 예.

○위원장 권인숙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민주당 여가위 간사 유정주입니다.

소위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신당동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가부가 또 여가위가,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중요성을 그리고 그 존재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장관님, 의원실에서 9월 2일 6차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그런데 1장짜리 보고서가 왔어요. 상단을 보면 ‘대외 공개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발송할 것을 전제로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내부 보고용이 있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따로 있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정주 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외 공개용은 있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지요. 장관께 질의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사안이어서요.

대외 제출용으로 한정한 이유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대외 공개용과 내부용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시 그것 확인하시고 대외 제

출용이라고 그렇게 문구를 만든 이유와 함께 기본 내용이 담긴 것, 보고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관련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 질의 답변은 국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주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59번과 60번,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가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어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여가위 위원으로서 또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오늘 갈 예정입니다.

○전주혜 위원 빨리 가서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 4월 20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여가위의 법률은 아니고 법사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잠정조치도 있고 임시조치가 있는데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잠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여가부 소관의 법률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가부에서도 그동안, 작년 4월 20일에 이 법이 제정된 이래 어느 정도, 법으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이 몇 명 정도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잠정조치 이것은 법원에서 검사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접근금지라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작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5353건인데 2022년 상반기만 해도 4529건으로 굉장히 많고,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이나 따라다니기나 진로 막기 이런 부분에 잠정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좀 해 보고, 이 법은 법무부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한 실태 파악을 법무부와 여가부가 합동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장관님 이야기하신 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또 개정 의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는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잠정조치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부와 존경하는 정춘숙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일단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라는 개념은 결국 신고 때부터 들어가서 피해 지원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법을 내서 신고할 당시부터,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자장치 부착 그 부분은 법무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을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제가 제안한 법안은 잠정조치에 이러한 부착을 하자, 아예 법원 재판 중에도 하

자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이러한 것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판 중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위험 아니면 또 두려움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빨리 통과가 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신고 단계에서부터 지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러한 법률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러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오늘 현장에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 발 늦지 않았나 이런 고언을 드립니다. 어제 가시는 게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 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14일 발생한 사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 민심이 아주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았어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범인이 불구속 상태가 아니고 구속 상태였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를 들어서 이분이 불구속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어제 법무부장관님이 치료감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경찰청이 제출한 지난해 스토킹 관련 송치결정 현황을 보면요 8개월 동안 총 545건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 487명이 불구속, 구속이 58명입니다. 구속률이 10.6%에 불과하지요.

이번 사건은 저는 두 번이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서부지법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풀어 줬던 것이고요. 두 번째 기회는 올 1월에 피해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범인을 2차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영장이 기각됐던 사건이라면서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혹시 의견 제출하거나 여가부의 액션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님, 저는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파악할 수 있는…… 어제든 저희가 그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직접 여가부장관이나 여가부에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것을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도 찾아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시스템화돼서 여가부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통보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희 위원 그동안 그러면 여가부는 이런 시스템도 안 만들고 뭐 했습니까? 이제 와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통보시스템은 있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금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조은희 위원 아니, 그동안은 뭐 했느냐고요. 장관님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 치지만 그동안에 그러면 여가부는 뭐 했느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만 스토킹 사례를 막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정조치 안에 내용이 좀 더 포괄되는 부분도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법무부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아직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잘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상황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상황 파악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걸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오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다시 업데이트를 해 드리면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지금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에, 불법촬영 사건은 지금부터 시간이 꽤 있었던 그전의 일인데 그 부분을……

○위성곤 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2월과 6월에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18일에 징역 9년을 구형한 사건이에요. 검사 측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사회적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가부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피해자 본인에게 다 맡겨져 있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가부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집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안을 오늘 정부 입법으로도 제출을 했고.

저희는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서울교통공사가…… 이게 2021년 10월에 불법촬영으로 고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성곤 위원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여가부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책임이 있지요. 다만 문제는 이걸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께서 앞서 답변하실 때 2021년에 5300여 건이 있었고 2022년에 4500건 정도가 상반기에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나 이것에 대한 상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현재 이 부분은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자료들을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은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1366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심리적 지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잖아요. 사실 제출되어진 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법인데, 사실은 지원하는 법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하고 여가부와 그 사안을 공유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이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특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하는 부분은, 물론 여가부도 상당한 부분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든가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정조치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잠정조치의 결정,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위성곤 위원 협조를 해야지요. 그런데 여가부가 뭘 할 것이냐 여쭙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 말씀 같은 경우는 여가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가부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성곤 위원 여가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완벽하게 뭘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것이 여가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 틀째인데 여가부장관님의 답변이나 태도를 보면 이 사건을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 이런 가슴 아픔이나 절절함이 없어요. 그냥 실무 관리자로서 통계에 있었는데 연결이 잘 안 났고 이게 안 났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제가……

○위성곤 위원 법무부장관은 현장에 다녀왔는데 장관께서는 다녀오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가시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어제 그 얘기를 좀 했고 일단 폐북에 제가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라는 것을 올렸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아파하지 않거나 일종의 어떤 절차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가부가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법률보다 장관과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도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대통령님도 오늘 아침에……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도 밖에서, 제도가 안되어서 못 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억지라고 보아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찰과 여가부가 이런 사건을 공유하고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를 막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예,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침에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 유관 기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책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나 법무부랑 더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용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신당역 여성 살인 사건 관련되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회의장 앞에 작은 추모 공

간을 마련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너무 부족하지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데에 저 또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잠정조치를 하면 5명 중 1명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이번 피해자에게는 잠정조치를 안내했으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이번 피해자 사례 말고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기각되는 확률이 20%에 달한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제가 유관 기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잠정조치 중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접근금지 조치는 2개월까지만 가능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치기간 끝났을 때 연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두달 보호기간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사실 여기에서 또 연장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에 자꾸 구멍이 생기는 데요. 빠르게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빠르게 보호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꾸만 여성들이 죽음에 내몰릴까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했던 구조적 성차별, 저는 이게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의 원인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고요. 2020년 강간 피해자 중에 98%, 강제추행 피해자 중에 9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성폭력범죄 피해가 여성에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현실에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지해야 여성의 범죄 피해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스토킹범죄에 유독 20대 여성 피해자가 많고 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에서도 절대적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여성 대상 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원인은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옹혜인 위원 개별 사건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옹혜인 위원 구조적 원인은 없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구조적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쭙볼게요.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젠더폭력에 대해서 일각에서 남녀 개개인이 처한 범죄와 불행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젠더갈등으로 몰아가지 말라라는 의견들도 사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이것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옹혜인 위원 예.

남녀 개개인이 처한 범죄와 불행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처벌법에 대해서 개정사항은 있는지 그 부분을 법무부와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정춘숙 의원님이 내신 법안과 정부가 낸 입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옹혜인 위원 장관님,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남녀 개개인이 처한 범죄와 불행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의 이유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권성동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린 적이 없고 그다음에……

○옹혜인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여쭙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옹혜인 위원 아니요. 이런 여성폭력 사건들이 구조적 원인이 아니라 그저 남녀 개개인들이 처한 불행한 사건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느냐고 여쭙보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성이 더 많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법무부장관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옹혜인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관님과 이 여가위 회의를 할 때마다 도대체 여가위가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듭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에서부터 바꾸는 게 필수적인데 피해를 입은 후에 상담이나 법률을 지원하겠다는 대책들만 나오는 건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범죄, 스토킹범죄에서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잘 설득해서 피해자 보호 법안 통과까지 여가부장관으로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제가 오늘 장관님이 다른 위원님들께 하시는 발언을 들으면서 장관님이 여가부 폐지의 책임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 법무부가 해야 하는 일들을 이번 사건 이후에 빠르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장관님은 계속해서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같은 이야기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책임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다른 부처랑 무얼 하겠다’가 아니라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같은 답변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게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그런 여가부의 무능함이 여가부 폐지 여론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면에서 참 책임자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조은희 위원님도 전주혜 위원님도 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신 만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르게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위원님들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이 법안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여성가족부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원장 권인숙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건수의 스토킹범죄가 벌어졌잖아요. 2월에는 구로동 스토킹 관련해서 구속을 하지 않아서 또 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6월 8일 건도 경기 안산에서 살해 사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관계 기관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가부 주도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관계 기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올해 2022년 들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여가부장관이 주도해서 몇 건을 하셨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여성폭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권인숙 아니, 2022년 6월에, 그러니까 6월에 이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여가부장관님이 취임하신 뒤였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원장 권인숙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하셨나요? 여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폭력방지기본위원회, 여가부차관께서……

○위원장 권인숙 아니, 기본위원회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이 주도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른 관계 기관장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뭔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그런 긴박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묻

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차관님 주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차관님이요. 장관은 하지 않았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원장 권인숙 장관님은 하지 않았고.

다음에 한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북 글은 직접 쓰신 것이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폐북 글은 직접 쓰신 것이지요? 페이스북의 글은 직접 쓰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인지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어제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난 직후에 알았습니다.

○한준호 위원 보도 직후에 아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바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폐북에 내고 그다음에 현장에 갈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여가부장관으로서 이 관련된 사건을 봤을 때 법무부와 여가부의 역할은 각각 어떻게…… 법무부의 역할은 명확하고요. 여가부 역할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가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법에서는 교통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한준호 위원 장관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한준호 위원 즉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는 책임에

비해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런 정보가 공유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 취임 직후에 혹시 관련된 회의나 관련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예, 그래요.

여가부를 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82건의 법률안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성폭력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에 내부적인 조직들의 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여가부의 이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9월 6일입니다—여가부가 약자와의동행위원회라는 곳하고 한부모가족정책간담회 진행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당시에 여가부에서 내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보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직의 기강 해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떤 착오가 있어서 나간 것이어서……

○**한준호 위원** 단순 착오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위원** 이게 자칫하면 예전에, 헌법 제7조라든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까지 해석이 될 소지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직원에 대한 기강 해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단속을 하셔야 된

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보면, 지금 여가부의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행복도시법 16조에 의해서 외교, 통일, 법무, 국방, 여가는 이전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보도에 그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민주당 의원님이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여가부하고 방통위 이전에 대한 내용들은 단순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처음 논의의 시작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법무부하고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처음 시작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한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전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래서 나온 게, 여가부하고 방통위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장관님의 의견을 좀 여쭙보겠습니다.

여가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폐북에서 쓰신 글처럼 기능들의 강화가 필요하고 많은 부처들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두 번째 조직들에 대한 내부적인 기강 해이 부분은 장관님과 차관님이 잘 단속을 하셔서 가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전과 관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이전 이후에 여가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역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여가부의 업무가 약화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여가부가 세종시로의 이전과 폐지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이전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폐지의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폐지보다는 지금 기능 강화를 얘기하고 계시니까 여가부를 존속시키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시간의 선후는 결국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도 국회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종시……

○**한준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세종시 이전도 역시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어떤 것이 빨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결정 자체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위원**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전 문제도 행복도시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고,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가부의 기능 강화는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률들도 따라야 되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장관님의 앞으로의 역할은 여가부 폐지에 있습니까, 앞으로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들의 기능 강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두 개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준호 위원** 그 두 개가 배치되지가 않는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기는 한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 생각만 짧게 말씀드리면, 여가부 폐지의 문제에 대한 것은 이후에 어떠한 역할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로 배치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그러면 각 부처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그 역할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들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에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산하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기능 역할은 제대로 하시면서 폐지 부분은 국회하고 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의 조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건지는…… 그것은 사실 지금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 하시면서 여가부 기능 강화는 얘기할 수 있고 여가부 이전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한준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6월 전에 관계 기관 회의를 했냐, 누가 참석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가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나 또 스토킹이나 이 관련해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얼마나 했고 성과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자료 제출해 주시지요.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계속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가부가 어떤 식으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가졌고 어떤 식의 논의를 했는지 충실하게, 참여자까지 합해서요, 충실하게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 먼저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에 급급해 가지고 성급한 대책을 내는 것, 이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부처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초동수사 과정에 있는 경찰 그다음은 검사, 법원, 여가부는 통지를 받고 나서 이후의 일들, 이런 것들을 여가부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말로 스토킹범죄라든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 여가부는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살피고, 특히 현장을 잘 살피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일이 지난해 10월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 협박하는 그것을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었고 그래서 수사 재판 중이었지요. 그런데 올 1월에 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 2차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법원에 기소가 되고 그러면 병합심리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형사 고소당시에 왜 경찰은 추가로 영장 신청을 안 했고, 특히나 안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재판 중에 병합심리가 이루어지면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그 당시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철저히 돌아갔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저는 구속영장은 발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장관 혼자 생각이나 의견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경찰, 검찰 또 법원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

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셨는데 저는 어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다음에 이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처음에는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했고 두 번째는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송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살해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말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주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묻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로 먼저 봐야 되고 이것을 경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항상 시스템을 통해서 저한테 통보가 되거나 여가부에 통보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책무는 굉장히 많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미애 위원** 그래서 장관님, 지난 4월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법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셨잖아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도 1366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1366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기 현장이 열악한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한지. 거기에 너무 업무가 과중돼 있어요.

여가부도 사실은 예산 자체가 현저히 소액입니다.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제대로 여가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철저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1366에 다 몰아넣어 가지고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도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예가 늘어나는 이유가 다 성격이 다 다른데 한꺼번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형식만 갖춘다는 느낌으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지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챙겨 가지고 데

이트폭력은 데이트폭력대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 범죄대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말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부여된 의무에 적합하게 저에게도 권한이 올 수 있도록 관계 부처랑 노력해서 같이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낸 법안이나…… 제가 와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인지 부조화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것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가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지금 낸 법안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성안인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법무부장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서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1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는 아닙니다.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저기 다 1분 드렸는데요.

○위원장 권인숙 그냥 마이크 없이 얘기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아니, 아까 1분 추가로 주셨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1분 다 들어가 있을걸요.

○김미애 위원 안 주셨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나 힘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만 생기면 마치 여가부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법에 그런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몰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 법원이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나 그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현장에 꼭 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꼭 살펴보고, 이미 발의했지만 이번에 수정할 수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것까지 또 내년 예산에도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장관님,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 법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촘촘한 법률 지원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한 대전제는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두텁게 실행할 수 있는 여가부의 존치 또 기능 강화라는 생각을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여가부 자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중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언제까지 발의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날짜는 아직 특정되지는 않고, 지난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 정기국회 내에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리고요 여가부가 전문가 간담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그래서 5차 간담회 회의 결과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필요’ 이런 답변이 왔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회의 결과로 제출하는데, 한두 번은 아니니까요.

장관님, 5차 간담회에도 참석했고 6차 간담회에 참석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이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경찰대학교 교수님이 여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따로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초기 개입……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정주 위원 좀 애매합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대학교 교수님이요?

○유정주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에 대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를 모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탁 치면 탁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고 또 회의록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보여 주기, 들려주기, 쇼잉하기입니까? 그러니까 듣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자료도 회의록도 요청할 때마다 오는 것이 참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안 논의를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문 리스트 없고 유선 통화와 면담을 하면서 수시로 협의 중’ 이런 답변을 또 받았어요. 행안부와 몇 번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진행 중인지조차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계속되는 국회에서의 자료 요청과 질의에 무슨 죄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답변하는 장관과 여가부의 모습은 입법기관의 무시나 여가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대하는 여러 계층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여가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캄캄이로 너무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진짜 캄캄이 진행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 온 여가부장관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가부 쉽게 폐지되지는 못할 겁니다.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할지…… 기능 강화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저희 의원실에서 몇 번 전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안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기능 강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정주 위원 기능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유정주 위원 저희 의원실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몇 차례를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왜 이전에 안 하십니까, 뭐 하러 이런 공방전을 벌이게? 몇 번을 저희 의원실에서 전달했는데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반칙입니다, 장관님.

그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사실상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기능 강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요.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도.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되면…… 폐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가부가 계속 존치할 것이면…… 폐지의 목적을 갖고 오셨으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는 로드맵뿐만이 아니라 기능 강화의 로드맵도 입법부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유정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권인숙 짧게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발전적 해체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누가 업무를 덜리 버리하느냐 그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국민의 대표로 여기 와 계셨고,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가부는 많은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절된 서비스를…… 오늘 이것만 보셔도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절된 서비스를 해서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최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한계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안 하겠다라든가 여가부 내부의 기강이 해이됐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구요.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일종의 발전적 해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가부 폐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라고 몇 번 질의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잘 기록되려면 가감 없이 소통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런데 절차를 아신다면 폐지가 쉽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기능 강화 로드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공유하고 봐 주십사, 회의록이나 어떠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애매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상임위에 와서 질의한 뒤에 다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뒷북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정경희 위원** 정리……

○**위원장 권인숙**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지금은 대체토론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이 아닌데 장관을 상대로 그런 질문을……

○**위원장 권인숙** 아니, 발언 기회 얻어서 말씀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발언 기회 주신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정주 위원** 마런 중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불의의 피습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도 스토킹범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막을 보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데서 사건이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범죄를 사전에 하나라도 막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여쭙보려고 하는 것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이 아동·청소년 관련된 기관하고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체육시설이라든가 PC방, 오락실 이런 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숙박업소라든가 여성 전용 공간 등에서 최근에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숙박업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잠든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이 작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예가 있고요.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예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이 여성 전용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와 여성 전용 공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요 심부름 업체 등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현재로서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전과 14명이었는데 출소 후에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사

원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업 같은 것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을 지금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라든가 여성 전용 공간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아청법에 따라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54만 개여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저희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 물론 아동·청소년이 우리가 주력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정경희 위원 그것을 국회에서 법제화를 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여성가족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향후 서로 협조를 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가능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국회에 잠시 있었으니까,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오늘같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느끼는 비통한 심정은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여가부도 다 당연히 의견

을 낼 텐데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여가부가 실현하는 부분,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한 간극을 느낍니다, 실제로 일을 해 보면서.

그래서 그 파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일하는 인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현재의 상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서도 반영을 해 주셔야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지금 이 신당역 사건은 너무나 진짜 슬프고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무뿐만 아니라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또 다른 위원님…… 5분 대체 토론은 지금 다 하셨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신당역 쪽에는 언제쯤 가실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마 이거 끝나고 곧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준호 위원 일정 이후에 바로 가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이후에 여가부 내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법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여가위 간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쟁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가부의 공직기강 문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원의 실수 정도로 치부를 하시는 것은 부처의 책임자로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의원의 보도자료를 그냥 내보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 내에서, 차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직원을 징계를 하라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지만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쪽에서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든 이렇게 보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잘 알겠고. 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강 해이하고는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장관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여가부 폐지 등, 이전 등 이런 문제와 엮여서 정쟁적으로 비치면서 여가부 기강 해이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정확하게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인숙	김미애	김한규	용혜인
위성곤	유정주	이소영	이원택
전주혜	정경희	조은희	최승재
한준호	홍정민		

○청가 위원(3인)

김선교	양이원영	장경태
-----	------	-----

○위원 아닌 출석 위원(2인)

윤영덕	정춘숙
-----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차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박난숙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대변인	조민경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가족정책관	김숙자
기획재정담당관	김가로
법무감사담당관	이수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직무대행	변주연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조은희·김선교·김홍걸·박정하·배준영·서일준·양향자·유상범·이명수·이태규·지성호·최영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강선우·강병원·박광온·양경숙·윤영찬·윤준병·인재근·최연숙·홍성국·홍영표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전용기·백혜련·임호선·신정훈·고용진·홍성국·노웅래·한병도·정성호·서삼석·이원욱·안규백·최혜영·조정식·윤재갑·홍정민·고민정·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6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9. 김상희 · 강준현 · 권인숙 · 김승남 · 남인순 · 류호정 · 윤관석 · 이은주 · 인재근 · 임종성 · 정춘숙 · 최혜영 의원 발의)

8월 30일 회부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박주민 · 강민정 · 강준현 · 김민철 · 김승원 · 김정호 · 김한규 · 신현영 · 유정주 · 윤영덕 · 이수진 · 이용우 · 임호선 · 한준호 · 황희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조은희 · 김선교 · 김홍걸 · 박대수 · 박정하 · 배준영 · 서일준 · 서정숙 · 양향자 · 유상범 · 이태규 · 지성호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소병훈 · 김두관 · 김민석 · 김병기 · 김승남 · 박상혁 · 양향자 · 어기구 · 인재근 · 임종성 · 권칠승 · 김남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일 회부됨

2023년도 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2. 9. 2.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5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9. 5. 이병훈 · 김민철 · 박광운 · 박정 · 유정주 · 이상현 · 이용빈 · 전용기 · 전해숙 · 주철현 의원 발의)

9월 6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조은희 · 김선교 · 김홍걸 · 박정하 · 배준영 · 서일준 · 서정숙 · 유상범 · 이명수 · 이태규 · 지성호 의원 발의)

9월 8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9. 13. 조은희 · 김선교 · 김홍걸 · 박정하 · 배준영 · 서일준 · 서정숙 · 유상범 · 이명수 · 지성호 · 최영희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2. 8. 16. 김영배 · 고민정 · 김윤덕 · 박광운 · 박성준 · 윤건영 · 이상현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한병도 의원 발의)

8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이양수 · 김승남 · 김태호 · 김학용 · 박덕흠 · 서삼석 · 안병길 · 안호영 · 윤재갑 · 이개호 · 이달곤 · 이만희 · 이원택 · 정운천 · 정희용 · 주철현 · 최춘식 · 홍문표 의원 발의)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